진로탐색학점제운영규정 5-2-20

규정번호	5-2-20
제정일자	2022.8.8
최근개정	2026.2.6
개정차수	4차 개정
관리부서	취·창업팀 AI융합진로지원센터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4조(교과이수단위) 제14항에 따라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·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탐색학점제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진로를 탐색·설계하고자 하는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진로발달 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.(개정 2026.02.06.)

1. 진로 탐색·설정 단계: 주로 저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자기이해 및 진로 탐색·설계를 중심으로 운영한다.(신설 2026.02.06.)
2. 취업 준비 단계: 고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직무 이해 및 취업 준비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한다.(신설 2026.02.06.)
3. 실전 취업 단계: 졸업 예정자 및 이에 준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실전 취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한다. 단, 세부 적용 대상, 학년별 운영 범위 및 단계별 교과 편성은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지침 및 학년도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른다.(신설 2026.02.06.)

제4조(주관부서) ① 진로탐색학점제는 진로 발달 단계에 따라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한다.(개정 2026.02.06.)

② 진로 탐색 및 설정 단계의 교과 운영은 AI융합진로지원센터가 주관한다.(개정 2026.02.06.)

③ 취업 준비 및 실전 취업 단계의 교과 운영은 취·창업팀이 주관한다.(신설 2026.02.06.)

④ 학과(전공)는 진로탐색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생 지도, 담당교수 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.(신설 2026.02.06.)

⑤ 주관부서는 상호 협력하여 교과 운영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, 세부 역할 분담 및 협력 사항은 운영지침에 따른다.(신설 2026.02.06.)

제5조(진로탐색학점제신청) 진로탐색학점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해당 교과목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.(개정 2026.02.06.)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AI융합진로지원센터에 진로탐색학점제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개정

2026.02.06.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고, 그 밖에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1.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(개정 2026.02.06.)
2. 진로탐색학점제 교육운영계획 승인 및 학점 부여에 관한 사항(개정 2026.02.06.)
3.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성과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(개정 2026.02.06.)
4. 기타 진로탐색학점제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(개정 2026.02.06.)
5. <삭제(2026.02.06.)>

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⑧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다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육과정) ① 진로탐색학점제 관련 교과목은 전공 또는 통합전공으로 편성할 수 있다.(개정 2025.1.23., 2026.02.06.)

② <삭제(2022.12.12.)>

③ 교과목 구성, 운영 방식 및 세부내용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.(신설 2026.02.06.)

제8조(승인 및 교과목 개설) ① 진로탐색학점제 교과목은 제4조에 따른 주관부서가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(개정 2026.02.06.)

② 진로탐색학점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 학과(전공)는 신청기간에 주관부서에 교과목 개설을 신청하여야 하며, 주관부서는 진로탐색학점제 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·지원한다.(개정 2026.02.06.)

제9조(학점인정 및 성적) ① 진로탐색학점제운영지침 평가기준에 따라 지도교수가 성적 평가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학점을 부여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② 진로탐색학점제 관련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종합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P(Pass)로 인정한다.

③ 학점인정 최종 심의를 위해 운영 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한다.

제10조(장학금) <삭제(2026.02.06.)>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, 제7조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1항, 제6조제3항·제4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적용하되,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(제7조, 제9조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호·제2호·제3호, 제4조제1항·제2항·제3항·제4항·제5항, 제5조, 제6조제1항·제5항제1호·제2호·제3호·제4호·제5호, 제7조제1항·제3항, 제8조제1항·제2항, 제10조)